축산물 위생·안전관리 실적평가와 향후추진계획

석희진 농림부 농촌진흥과장

I. 현 황

1. 축산물 안전 관리체계 ||||||||||||

→축산물 위생 관리 개요>

◇ 축산식품 위생관리는 '62년 이래 농림부에서 담당해오다 '85년 보건사회부로 일부(가공품)가 이관되었으나, 소비자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'98.
6월 다시 농림부로 환원

- □ 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사료관리법, 약 사법(동물약품취급규칙),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의거 가축의 사육, 도살·처리, 집유, 축 산물의 가공·보관·운반·판매의 전 과정 을 농림부가 관리
- □ 허가 · 신고대상 축산물 업종
 - 허가 대상 : 도축업, 집유업, 축산물가공 업(식육가공업,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), 축산물보관업
 - 신고 대상 :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

〈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도〉

농가 가축 _{도축} 시장	기공	보관 운반	판매	음식점	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사료 관리법, 약사법(동물약품취급규	식품위생법
• 도 축 업	식육가공업	업 ^{칙)} , 축산물가공처리법				
• 집유업	• 유 가공업 • • 악 가공업	농 림 부	보건복지부			

	도축장			축산물가공업			축산		축산물판매업					
계	포유류	가금류	집유장	계	식육	유	알	물보 관업	물운 반업	계	식육	식육부산물 전문	수입 축산물	우유류
166	105	61	61	2,304	2,070	153	81	143	784	54,220	47,568	860	1,002	4,790

(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, 수 입축산물판매업, 우유류판매업)

2. 축산식품 위생관리 업무 추진기관 ||||||||||

<축산물 위생 관리 개요>

농림부 축산국

- 축산물에 대한 위생 · 안전성 업무의 종합조정
 -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및 사료관리법령 등 운용
 -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
 - 축산물위생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
 - 축산식품 유관단체 · 협회 지도 · 감독
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- 수출입 축산물위생검사계획 수립
- 축산물 기준 · 규격 및 시험방법 등 연구 · 검토
- 축산물 검사 기법 정립 및 교육
- 축산물안전성 모니터링검사 및 탐색조사 실시

검역원 지원(서울, 부산, 인천, 군산, 제주)

- 수출입 축산물위생검사
- 업소 위생검사 및 관리 실태점검, 미 검사품 유통단속
- 축산물가공품 성분 · 규격 및 위생검사

시·도및시·군·구

- 영업허가 및 신고수리 등 인 · 허가 관리
- 업소위생검사 및 관리실태점검, 미 검사품 유통단속
-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

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 (44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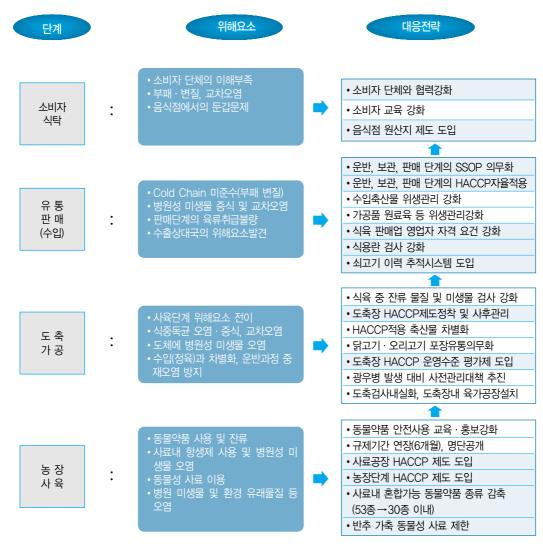
-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
- 축산물가공품 성분 · 규격 및 위생검사

<축산물 위생관리 지원 기관>

구 분	기 관 명
축산물위생교육기관	한국식품개발연구원, 대한수의사회,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, 보건산업진흥원, 축산기업조합 등 5 개 기관
축산물위생검사기관	검역원, 식의약청, 축산연구소, 시 · 도 가축위생시험소, 한국식품개발연구원, 한국생활용품연구원, 삼성에버랜드(주) 식품연구소 등 38개 기관
유 관 기 관	축산연구소, 농협, 한국소비자보호원, 생산자단체, 소비자 단체 등

Ⅱ. 위생·안전대책 추진방향

농장(Farm)에서 식탁(Table)까지의 체계적이고 일 관된 축산물 위생·안전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



교육홍보를 통한 의식전환 유도와 위반자 처벌을 병행 우수브랜드를 중점 육성하여 안전 및 위생기준 향상

Ⅲ. 축산물 위생·안전성 제고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

- 1.1 동물약품 안전사용지도 및 식육중 잔류방지 규제강화
- 1) 추진 과제
 -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(년2회)·홍보 실시
 -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(농림부 고시)
 - 규제기간연장, 명단 공개, 관리 방법, 1농가 1공무원 담당제 도입 등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 - 권역별 (수도, 충청, 호남, 영남, 제주 등 5개) 전국순회교육 (2회)실시
 - * 04년 2회 순회교육 : 04년 6월 및 11월 교육실시(1,480명)
 - * 05년 2회 순회교육 : 05년 6월 및 11월 교육실시(1,978명)
 - HACCP적용작업장명단, 동물약품안전 사용수칙 등 제작배포(15천부)
 - * 리후렛4,000부, 시장바구니5,000개, 포스타 게재(전면광고), 수첩5,000부 등
 -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(농림부 고시: 05.3.2)으로 규제강화
 - ① 잔류위반농가(모니터링검사 결과)에 대한 규제검사기간 연장

- 규제검사기간연장으로 특별관리강화 :
 (종전) 3개월 → (연장) 6개월
 - * 규제검사(도축된 지육 계류 후 검사)결 과 잔류허용기준초과 지육은 폐기
 - ② 잔류 위반농가명단을 검역원 홈페이지에 공개
 - ③ 규제검사 대상 농가 집중 관리
 - 규제검사 대상농가에 대한 1농가 1공 무원 담당관 지정
 - 규제검사대상농가의 특별관리기간(6 개월)동안 출하상황 감독
 - 잔류원인규명, 후기사료급여, 휴약기 간 준수 등 사양관리 개선지도
 - ④ 잔류위반농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검사 대상농가의 익명 출하 방지 등 에 대한 감시, 감독 실시
 - ⑤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에서 잔류허용기 준 초과농가에 과태료 부과
 - (종전) 연속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 → (개선)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
 - * 잔류위반농가 지정·관리 현황 : ('01) 161농가, ('02) 128농가, ('03) 183농가, ('04.) 200농가, ('05.) 222농가
 - * 위반두수 : ('01) 177두, ('02) 145두, ('03) 236두, ('04.) 299두, ('05.) 309두 +검사항목 :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149 종 중 125종 검사
 -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53종, 농약등 환경오염물질 72종
- 검사내용 : 모니터링조사, 규제검사, 탐색조사
 - ⑥ 모니터링 간이검사 결과 잔류위반예측

농가의 일시 출하제한

- 모니터링 간이검사 양성농가에 출하제 한 통보 (정량검사 완료시까지)
- 3) 향후 추진계획
- 권역별 축산물 위생·안전성 확보 전국 순회 교육 (06년중 2회)
 - 농가, 사료·도축·가공·보관·운반· 판매단계 종사자, 학교급식 등 대상
 - 동물약품 안전사용방법, 식육취급요령, HACCP적용방법 및 우대조치 등
-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 추진
 - 모니터링 검사결과 양성축 출하 Lot출고 보류후 정량검사 등
- 잔류위반농가 과태료 인상조정 : 100만원

→ 300만원

- 약사법 제72조의6 제3항과 제79조 개정 추진 (복지부와 협의)
- 전국 항생제 내성균 감시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

1.2 사료공장 HACCP 도입 및 위해물질 관리 강화

- 1) 추진과제
- 사료공장 HACCP지침 마련 및 시행, 매뉴 얼 및 홍보물 제작배포
- 사료공장 HACCP 시행준비를 위한 교육실시
- 사료공장 HACCP 시행 및 인증서 발급 및 우대 조치
-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약품 종류 감축 계획 보고(대통령업무보고, '04.3.8): (현행) 53 종→(계획) 30종 내외로 감축

- 사료내 관리대상 중금속 및 잔류농약 종류 확대
 - 중금속: (현행) 8종 → (확대) 곰팡이독소
 등 추가 관리
 - 잔류농약: (현행) 17종 → (확대) 선진국
 수준으로 확대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사료공장 HACCP도입 근거규정 마련 (사료 관리법 개정, '01,3)
- HACCP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('00.7~'03.7)
- 사료공장 HACCP도입 기본방침 수립 ('04.2)
- HACCP 지침 마련을 위한 작업반(T/F) 구 성 ('04.2)
 - 축산연구소, 검역원, 농관원 등에 작업임 무 부여
- T/F팀 실무작업반에서 HACCP지침 및 매 뉴얼(안)마련('04,3~9)
- 사료공장 HACCP도입 대비, 시설개보수자 금 예산신청('05년 210억원)
- HACCP 지침안 타당성 검정을 위한 사료공 장 점검('04.10.12~20)
- HACCP 지침안 확정 및 입안예고, 규제심 사('04.11.14)
- 사료공장 HACCP 교육 실시('04.12.1~2)
- 국내외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조사('04.4.7)
 - 국내 사용실태(농협,사료협회), 외국실태 (축산연, 농관원)
-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 감축계획 협

- 의('04.5.28, 7.29)
- 농림부, 축산연구소, 검역원, 농관원 등 관계관 10명
- 동물용의약품 감축안 확정 :(현행)53종 →
 (조정)25종(△28종)
- 「유해사료의범위기준」개정고시안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 완료('04,10,14~27)
 -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 감축(안), 관리대 상 중금속 및 잔류농약 확대(안)을 병행하 여 추진
-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제출의견 협 의('04.11.17)
- 「유해사료의범위기준」개정고시('04.12.10, 농림부고시 제2004-72호)
- 사료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
 종류 감축(현행 53중→ 개정 25종)
- 중금속등 위해물질종류 확대(증 4종) 및 관 리대상 잔류농약종류 확대(증 10종)
- 사료공장 HACCP 지침 확정 공표 및 적용 메뉴얼 배포 ('04.12)
- 05 사료제조업체 교육실시 (05.12.15-12.16): 280명
- 3) 향후 추진계획
- HACCP 적용 사료공장 정책자금지원 등 인 센티브 부여
- 사료공장 HACCP 시행준비를 위한 교육 지 속실시
- 사료공장 HACCP 신청 · 심사 및 인증서 발 급 ('05.1월~)
 - * 사료공장 HACCP 지정 : 23개소
- 개정내용 지도 · 홍보 지속 실시('04.12~)

1.3 사육단계의 축종별 위해요소중점관리 (HACCP)제도 도입

1) 추진과제

- 사육단계의 HACCP지침 및 적용모델개발
 - 기본개념, 국제규정, 외국도입사례, 선행 요건프로그램. HACCP지침
 - * 05년도(돼지), 06년도(젖소, 비육우), 07 년도(산란계, 육계)
 - *사육단계 HACCP: 축사시설(인프라)를 바탕으로, 밀사정도, 가축입식요령, 안전 사료확보, 사육환경을 기본(선행요건프로 그램)으로 하고, 특정미생물 등 생물학적 요인, 동물약품·농약·중금속·환경물 질 등 화학적 요인, 주사바늘 등 물리적 요인, 병변·외상 등 병리학적 요인 등의 관리내용 기록 및 검증, 유효성분석 등을 통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제도임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사육단계 HACCP 지 침 및 적용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- 05.4. : 농림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로 채택(기획연구과제)
 - * 건국대 수의대 (책임 연구자 : 서정향 교수)
- 사육단계 HACCP개념 정립을 위한 자료수 집(05.10, 덴마크, 일본)
- 사육단계 HACCP 적용 방법, 사례 및 지침 입수
-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회개최(3회: 05.7, 05.9, 05.11, 06.3))
 - 기본개념, 국제규정, 외국도입사례 (일본, 미국. 유럽 등) 발표

- 위해요소(화학적, 생물학적)조사결과, 선행 요건프로그램 개발내용 발표
- Codex 7원칙 12절차에 의한 사육단계(돼 지) HACCP적용 지침(안) 발표
-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(06.3.24공포, 법률 제7915호)
- 법 목적(제1조), 위해요소중점관리(제9조) 에 가축사육부분 명시
- 3) 향후 추진계획
- 사육 단계(돼지)HACCP 적용 지침 확정 및 매뉴얼 배포
- 돼지 사육농가 HACCP 지침내용 및 적용 희망 농가 교육실시
- O HACCP 지정 희망 농가 심사 및 지정서 교부

< 돼지사육단계 HACCP지침 기본개념과 시행>

□ 사육단계 HACCP적용의 필요성

- 기술적 측면에서 볼때, 축산물의 위생 ·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사 육단계에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
-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볼때, 축산물 수입 완전 개방화에 국제 경경력을 확보와 수 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 로 우리나라산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 확 보가 필연적임
- 사회 문화적 측면에 볼때, 웰빙(wellbeing)시대에 문화 패턴의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진입을 위해서도 축산물의 위생 · 안전성 확보가 필요

□ HACCP 지침

- 돼지사육단계 HACCP지침은 기본적인 선 결과제로 선행요건프로그램의 준수와 HACCP계획서의 마련 및 구축이 필요
 - ① 선행요건 프로그램 : 크게 위생관리와 생산관리로 나눌 수 있음
 - a. 위생관리기준서로 @ 시설환경 기준 서(시설설계 및 설비, 시설보수 및 위생 ® 위생관리기준서(백신·화학 제 등 부재료, 돼지운반, 출하돼지관 리) ⓒ 사양관리자의 위생관리기준 서(종사자위생, 교육) 있음
 - b. 생산관리기준서로 ④ 週間관리기준 서, ® 생산계획관리기준서, ⓒ 후보 사관리기준서, ⑩ 교배사관리기준 서, ® 임신사관리기준서, ি 분만사 관리기준서, ⓒ 자돈사관리기준서, ⑪ 육성 비육사 관리기준서, ① 출하 돈 관리기준서, ① 육종관리기준서, ⑥ AI관리기준서 등이 있음
 - ② 선행요건프로그램이 충족되면, 그 다음 으로 HACCP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함
 - 5가지의 HACCP 실행 예비단계: 팀의 구성, 제품의 기술, 해당식품소비대상의 식별, 공정 흐름도 작성, 해당흐름도 검증
 - 7가지의 HACCP계획의 원칙수행: 위해 분석 실시, 중요관리점 식별, 각 중요관 리점별 허용한계치 설정, 감시절차 설정, 개선조치 설정, 기록관리절차 설정, 검증 절차 선정

□ HACCP운용 : 금년부터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HACCP지정 등 추진

2. 도축·가공 과정에/서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 |||||||||||||||

- 2.1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물량 확대 및 검사결과 평가
- 1) 추진과제
-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물량 확대
- ('04) 102천건 (모니터링 간이검사 96천건 및 정밀검사 6천건) → ('05) 120천건 (모니터링 간이검사 96천건, 정밀검사 6천건, 규제검사 예상 18천건)
 - * 규제검사기간 연장(3 →6개월)에 따른 검 사물량의 증가
- 잔류위반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집중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및 검사물질 그룹별 정밀검 사건수 재설정
- 시·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권역별 정밀정 량 검사항목 조정 및 정밀검사물량 배정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2005년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시달
 - 시·도 검사기관별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 물량 산정(집중검사항목설정 등)
 - * 산란계에 엔로플록사신 사용 금지 및 검 사강화 지시 (2회)
 - 모니터링검사: 간이검사 96천건 및 정밀 검사 6천건, 규제검사 18천건
 - * 잔류 물질 검사건수 : 한국 120천건. 미

국 34천건, 일본 8천건, 호주 16천건

- * 잔류위반율(04기준) : 한국 0.25%, 미국 0.73%, 영국 0.24%
- 3) 향후 추진계획
- 2005년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내용 평가회 개최 (06.)
 - 축종별, 항균물질 등 항목별 잔류위반정 도 평가
- 2006년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 확정(시도별)

2.2 식육중 미생물 검사 물량 확대 및 검사결과 평가

- 1) 추진 과제
 - 검사건수: (04) 100천건 → (05)확대 120 천건
 - 검사항목: 대장균수(E. coli), 일반세균수, 살모넬라균(Salmonella spp.)
 - 검사기관 : 시 · 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
 - 검사기간 : '06. 1. ~ '06. 12.
 - * HACCP적용 모든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시
- 2) 현재까지 추진 실적
 - 식육중 미생물 검사계획 수립 시달('06.1): 120천건
 -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 : 축종별 3건/주 1회 검사(8만건/년)
 - 살모넬라균: 도축 규모별 검사(4만건/년)
 - "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"(농림부고시)개정(05.3.29)
 - 검사항목 :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(살모 넬라균은 삭제)

- * 살모넬라균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에 의해 검사
- "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"시달 및 검사 실 시('06.1~12)
 - "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"(농림부 고시): HACCP적용작업장
 - 대상항목 : 대장균수(도축업 영업자), 살모넬라균(시. 도)
 - 검사물량(살모넬라) : 도축 규모별 검 사실시
- 3) 향후 추진계획
 - 2005년도 식육중 미생물 검사결과 평가회 개최(06)
 - 2006년도 식육중 미생물 검사계획 시달 (06.1)
- 2.3 도축장 HACCP제도 정착과 사후관리강화 1) 추진 과제
 - O HACCP 운용실태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개선

(시도 자체 점검 → 시도 간 교차 점검)

- 전반적인 위생수준은 많이 향상, 도축장 별 위생수준의 차이는 있음
- 지속적인 도축장 HACCP 운용실태 점검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로 도축장의 전반 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HACCP의 조기정 착을 유도
- O HACCP 미운용 업소에 대한 과징금제도 폐지

- -미 운용업체, 부실운용 업체가 있어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우려 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의 강화 필요성 대두
- O HACCP 교육 기관 및 교육 대상자 확대 추진
- 축산물가공, 유통, 판매업체 등의 관련 영업 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HACCP 교육실시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□ 도축장 HACCP 운용실태점검 (시도간 교 차점검: 03.7.1의무적용)
 - 1차 점검 : '03.07.~'03.08. (행정처분 62 개소)
 - 2차 점검 : '03.11.~' 04.01. (행정처분 32 개소)
 - 3차 점검 : '04.06.~' 04.08. (행정처분 18 개소)
 - 4차 점검 : '04.12.~' 05.02. (행정처분 7개소)
 - 5차 점검: '05.08.~'05.09. (행정처분 1개소)
 - 6차 점검 : '06.2~'06.4월

□ HACCP 미운용 업소에 대한 과징금제도 폐지 (행정처분기준 강화)

○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 표 11개정을 위한 법령 정비 중

구 분	1차	2차	3차		
현 행	경고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 30일		
개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30일	영업정지 2개월		

□ HACCP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신설

- 교육 실시 기관 확대
 - (현행): 한국식품연구원, 대한수의사회, 서울 시 보건환경연구원, 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
 - *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명시 (04.8.4)
-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의무교육실시 조항 추가
 - 영업자에 대한 교육 : 4시간, 종업원 : 24시간
 - 정기교육훈련 : 매년 1회이상 8시간 및 수시훈련 실시
- HACCP 담당자 교육실시('04년, 20회 928명)
 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 및 팀장과정 교육(9회, 437명)
 - 한국식품연구원 기본 및 전문과정 교육 (8회, 382명)
 - 대한수의사회 기본과정 교육 (3회, 109명)
- HACCP 담당자 교육실시(05년, 30회 1,590명)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 및 팀장과정 교육(11회, 650명)
- 한국식품연구원 기본 및 전문과정 교육 (11회, 584명)
- 대한수의사회 기본과정 교육 (6회, 292명)
-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(2회 64명)
- 영업자 HACCP 정기교육훈련 과정신설 추진
 - 한국식품연구원 '05년도 영업자 정기교

육과정 신설 (3회: 4월, 7월, 10월)

- 3) 향후 추진계획
-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 표 11개정(과징금 제도 폐지)
- 전 단계 HACCP적용에 따른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신설추진
 - 축산물위생교육원(농협)등 교육기관 확대 추진

2.4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

- 1) 추진과제
-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실시
 - 도축장 HACCP을 도입 · 운용하고 있으나, 여전히 소비자들은 운용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운용 수준도 차이가 있음
 - HACCP 우수운용 도축장에 대하여 우대 조치가 필요
-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법적근거 마련 (축가법 제9조 제10항 신설)
 - HACCP운용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자금 차등지원 등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실시 (한국소 비자연맹): 2회 (상·하반기)
- 평가원칙: 년 2회 실사단(30명)이 도축장을 직접 방문평가 후 평가위원회 (25인 이내: 생산자, 소비자 단체 등)상정·확정 및 발표
- 평가대상 : 전국 포유류 도축장 (울릉도, 백

령도 제외), 닭 도축장 중 HACCP 운용 도 축장 (135개소)

- 평가항목: 도축장 인프라 (도축검사라인, 환경상태 등)구축정도, HACCP운용실태 (위생관리, 시설관리, HACCP관리 등)
- 평가결과 (상반기) : 포유류 도축장 (상급 28개소, 중급 29개소), 닭 도축장(상급 11개소, 중급 12개소) 확정 발표
 - * 상반기 평가결과 도축장 운영자금 차등 지원 (578억원, 6,28)
-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 법적근거 마련 추진 중 (축가법 개정)
- 3) 향후 추진계획
- 06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실시 (06.8-11, 06년중 1회실시)
-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 관련 하위법 령 정비

2.5. HACCP적용축산물 차별화 및 HACCP불법 명칭사용 규제

- 1) 추진과제
- O HACCP적용 도축장, 가공장 생산 축산물의 소비확대 추진
 - 국가기관 : 국방부, 교육인적자원부, 보건 복지부. 노동부. 산자부
 - 정부투자기관, 지자체 등 105개 기관에 우 선 사용 협조 요청
- O HACCP 불법명칭사용 규제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04년부터 국가기관, 정부투자기관, 지자체 등(105개 기관)에 협조요청(년 3~4회)

- 협조요청 결과 HACCP 적용 가공장 개소 수가 증가 추세(264개소)임
- HACCP명칭 불법사용규제를 위한 법령(축 산물가공처리법)개정(04.1.29)
- HACCP 명칭 불법사용 현황파악 및 처분조 치('04.7.31): 16개소
-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내 용홍보(04.1.29 개정내용)
- 시·도, 관련업계 등에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명칭 불법 사용(광고·표시) 등 금지 홍보 ('04.12.16)
 - * 홍보용책자 (1천부), 팜플렛 (5천부), 리후 렛(10천부), 포스타(30천부),지하철광고(6 개호선, 2,030차량, 6개월) 등
- 3) 향후 추진계획
- O HACCP적용도축장, 가공장 생산 축산물 우 선사용 협조요청 지속실시
 - * 105개 국가기관, 투자기관, 지자체 등
- HACCP 불법명칭 사례 등을 수집 및 지속 적인 단속 실시
- HACCP불법 컨설팅 단속강화 및 제도구축 (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완료)
 - HACCP 컨설팅기관(업체) 자격요건 규정

2.6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 1) 추진과제

- 반추동물유래 동물성단백질사료 혼입여부 검사 실시
- BSE 예방을 위한 시설개보수자금 지원
- 양축농가·사료제조업체 등에 대한 교육· 홍보 실시
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광우병 예방을 위한 동물성사료 관리방안 마련('03 2)
-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개정고시('03.9.23)
 - 반추동물유래 동물성단백질사료 이외 동 물성유지 · 어분 · 어즙흡착사료 등도 반 추동물용 사료로 사용 금지
- 사료공정서 개정고시('03.9.23)
 - 반추동물사료 생산공정에서 동물성단백
 질사료 사용금지
 - 반추동물사료 전용운반차량, 톤백 및 지 대포장 구분 의무화 등
- 사료검사요령개정고시('03.9.23)
 - 반추동물사료에 대한 반추동물유래 동물 성단백질사료 혼입여부 검사제도 도입 (2004년부터 시행)
- 동물성 단백질 사료 관리실태 일제 점검 ('04.10.25~11.4)
 - 점검대상 : 전국 90개 배합사료공장, 시 도 및 중앙점검반 합동
- 시·도 사료담당자 및 사료제조업체 등에 대한 교육('05, 12, 1~2)
 - 장 소 :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
 - 참석자(210명) : 시·사료검사공무원, 사료제조업체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등
- 3) 향후 추진계획
-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
- 2.7 광우병 발생 대비 SRM 제거시설 설치 및 소각장 지정
- 1) 추진과제

- 도축장내 특정위험부위(SRM) 제거시설 설 치 (시범사업)
 - (05) 2개소 → (06) 3 → (07) 5
- SRM 소각장 지정 및 운영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'05 SRM제거시설 설치예산 확보(2개소): 국비14억원 (70%), 지방비 4억원(20%), 자 담 2억원 (10%)
- 05년도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추천 요청 (시도): 5개소 신청
-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확정 : 2개소
- 선진국의 SRM 제거시설 견학 (일본, 덴마크)
- SRM 제거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설치요령 시달
- 설치 자금 배정 (업체당 7억원 보조, 지방 비 2억, 자담 1억)
- 발생전 특정위험부위(SRM) 유통실태 파악
- SRM 추정생산량 (1일 60두 도축시) : 1일 1.02톤(년간 306톤)
 - 1두당 SRM 생산량 : 17Kg 생산
- 폐기물처리장 현황파악: 7개소
- 06년도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추천 요청 (시도): 2개소 신청
-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확정 : 1개소
- 3) 향후추진계획
- SRM 제거시설 설치상황 점검 및 교육 실시
- SRM 소각장 지정 및 세부운영지침(안) 작성
- 06년도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확정 : 1개소
- 2.8 도축 검사 강화를 위한 검사 인력확보

1) 추진 과제

- 소·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의 검사관 및 보 조원 소요인력 추정
 - 필요 인원 : 도축장당 10명(검시관 및 보조원)
 - 검사관 (540명) : 소도축장(2명), 돼지도축 장(3명)
 - 검사보조원 (640명) : 소도축장(2.9명), 돼 지도축장(3명)
- 도축 검사관 확보 (지자체 협의)
- 도축검사보조원 채용 등 확보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도축 검사관 65명 지자체 정원 인정 (행자부)
- 단순행정지원업무 보조원 확보 (301명)
- 도축 검사관 확보 근거 마련 (축산물가공처 리법시행령 제17조의2)
 - * 도축검사관 250명 확보 근거 조항 신설
- 도축검사보조원 채용 · 배치 (100명), 운용 계획 확정 및 시달
- 3) 향후 추진 계획
- 06년 도축검사보조원 채용(30명)
 - 채용공고, 원서접수, 서류전형, 필기 · 면접시험 등 실시 후 도축장에 배치
- 도축검사보조원 채용, 임무 등 관련근거마 련(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중)
- 도축검사결과의 농장 활용방안 마련 시범사 업 실시검토(제주도)
- 2.9 닭·오리고기 지육·정육의 포장 유통 의 무화 추진
- 1) 추진과제
- 닭고기.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기본계

획수립

- 포장의 정의, 포장원칙, 의무시행시기, 기 본자료 수집 · 분석
- *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계육협회에서 개선 책 마련 요구
- 포장유통 의무화 연구용역사업 추진
-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□ 포장 유통 의무화 기본계획 수립

- 0 목 적
 - 비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·오리고기의 재 오염 기회 차단
 - 포장 유통(표시)으로 수입 닭·오리고기와 구별에 따른 차별화 가능
- 포장의 정의 (안)
 - 닭 · 오리의 지 · 정육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, 개별진공포장을 한 것으로서 외부에 합격검인 및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가 된 제품을 말함
- ㅇ 포장 워칙
 - ① 닭·오리 도축장 외부로 반출되는 지육(자 체 가공제외)의 포장
 - 포장 후, 합격검인 및 포장외부에 도축장 명. 소재지. 함량 등 표시한 후 유통
 - ② 닭·오리고기 가공장 생산 부분육, 정육 등의 포장
 -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도축장 · 생산 가공장 소재지, 함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 고 자체위생관리인의 확인 후 유통
 - ③ 닭·오리고기 판매장(백화점, 대형마트,

재래시장, 정육점)에서 지육 또는 부분육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

-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도축장 · 생산 판매장 소재지, 함량 등을 외부에 표시(국 내산과 수입육 구분표시)한 후 판매
- ④ 수입된 닭·오리고기를 가공하거나, 판매하는 영업자도 국내산의 경우와 같이 포장, 표시 등을 하도록 의무화
- 의무시행 시기
- ① 닭·오리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: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별시행
 - 1일 도축 8만수 이상: 2007년부터 시행
 - 1일 도축 8만수 미만: 2008년부터 시행
 - * 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후 1년간 유예기간 설정 (홍보. 교육 등 사전준비)
- ② 가공장 반출 부분육·정육 : 2008년부터 시행
- ③ 지육을 절단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 부분육: 2008년부터 시행

□ 포장 유통 의무화 연구용역 추진 완료 (건국대 민상기 교수)

○ 닭고기, 오리고기 유통실태, 포장방법, 표시 방법. 분할방법 등 연구

□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완료

-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 산물을 포장하여 보관, 운반,진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0조의 2, 제1항)
- 제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 류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
통령으로 정함 ((법 제10조의 2, 제1항)

- 3) 향후 추진계획
- 포장유통 의무를 위한 교육 홍보 추진
- 축산물가공처리법 하위법령 개정(06) : 시 행규칙 제2조 (별표 1) 및 제23조 (별표 8)
- 닭·오리·칠면조등 가금류의 식육포장의 무화, 합격표시 및 포장시 표시방법

3. 유통단계의 재 오염 방지 대책 ||||||||||

- 3.1 축산물 유통(보관·운반·판매·집유)단계 HACCP도입
- 1) 추진과제
- 판매단계 HACCP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
- 판매단계 HACCP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추진
- 집유·보관·운반단계 HACCP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
 - * 축산물가공처리법상 HACCP적용규정마 련. 구체적 평가기준 미비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HACCP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T/F팀 구성 ('04.9)
- 농림부, 검역원, 시·도(서울시, 경기도) 한 식연, 관련단체(업계) 등
-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축산물판매업소(식 육)조사(04.11.9~11.24)
-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 및 중소규모 축산 물판매업: 11개사
-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HACCP 분과위원회 회의 추진(서면, 12,23)
- 식육판매업 HACCP 평가기준 확정 및

- HACCP적용업소 심사 · 지정
- 집유단계 HACCP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중(중가발표회 개최)
- 3) 향후 추진계획
- 축산물판매업(식육) HACCP 적용 모델 개 발 보급
- 집유업 HACCP적용모델개발추진 (06.11)
 및 교육 · 홍보
- 축산물 보관·운반단계 HACCP적용모델 개발 추진
- 3.2 축산물위생감시원 (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) 제도 정착
- 1) 추진과제
-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확대
- (°04) 1.031명 → (°05) 2.000명
- 실질적인 감시가 되도록 명예축산물위생감 시원의 감시 수당 인상
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실시
- 확대 위촉 후 연 1회 이상 교육실시(시·도 지사)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요령 제정 : 위 촉확대
- $-(04) 1.031 \text{ g} \rightarrow (05) 2.000 \text{ g}$
- 위촉기관: (종전) 시·도지사 → (확대) 농 림부장관, 시·도지사
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감시수당인상을 위한 예산안 반영 (05년)
- 예산내역: 축산발전기금 133백만원 ('04 : 96백만원)

- 감시활동수당 : (종전) 3만원/일 → (확대)5만원/일
- 지급일(활동일): (종전) 15일 범위내 → (확대) 30일 범위내
- 시도에 해당 기관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지시: '04.11.5
-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위촉장 및 감시원증 발급
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순회교육: 한국소비 자교육원.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
- 3) 향후 추진계획
-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시·도별로 교육지속 실시

4. 판매·소비단계의 위생·안전성 확보 대책 |||||

- 4.1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및 식용란 위생검 사 실시
- 1) 추진과제
 -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등 계획수립
 - 05 축산물 위생 감시지침 시달
 - 식용란 검사 기본계획 수립
 - 검사기관, 시료채취, 검사대상, 검사항목 등 세부검사요령 마련
 -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확정 고시
- 2) 현재까지 추진 실적
 - 05 축산물 위생감시지침 시달
 -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등 실시
 - 축산물 수거검사 4,573건, 부적합 23건 (위반율 0.50%)

- 영업장 위생검사 60,069개 업소, 위반업 소 3,029개소 행정처분
-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확정(농림부고시 2005-19: 2005.11.17
-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 : 전국 시·도 축산 물위생검사기관
- 검사대상 : 닭, 오리,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
- 검사항목: 이물질검사, 변질 · 부패란검 사,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검사
- * 식용란이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검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식용란 검사에 관한 위생검사 세부실시요령 마련
- 3) 향후 추진계획
 -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실시
 - 검사상황 및 위반 농가에 대한 관리실태 감독

5. 수입 축산물 위생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 !!!!!!

- 5.1 수입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
- 1) 추진 과제
- 국제업무 전담조직 설치, 국가별 축산물별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법 도입, 국제기구 참석 활성화 방안 등
- 축산물 수출 상대국 작업장 (도축·가공· 보관)장 점검 강화
- 2) 추진실적
- 수입위험평가팀(검역원 검역검사과) 구성 ('04. 8. 30)
 - 현재 당면 통상현안중 주요현안부터 수입 위험 평가 업무 수행

- 수입위험분석지침 작성 및 검역원 관련과에 배포 ('04.12)
- 국제기구회의 참석
 - 04년도 : 총 22회 참석(WTO/SPS 3회, OIE 3회, Codex 8회 등)
 - 05년도 : 총 12회 참석(WTO/SPS 6회, OIE 2회, Codex 4회 등)
- 해외수출작업장 현지점검 (04년 : 10개국 9 회. 05년 : 12개국 9회)
- 3) 향후 추진계획
- O 국제기구 전담조직 설치
 - 우선 검역원의 국제협력계 및 수입위험평 가팀을 활용하고, 검역원 조직진단 및 검 역기능 발전대책 수립과 연계, 국제업무 및 수입위험 평가조직 신설 추진
- 국제기구회의 참석 지속 추진(년중)
- 축산물 수출 상대국 작업장 점검 지속 추진 (년중)

5.2 축산물 수입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

- 1) 추진과제
-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수입축산물 거 래 투명화
-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업무를 검역원으로 전화
- 2) 현재까지의 추진실적
-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 : 1,772개소
 - 관할 시 · 군 · 구에 영업 신고
-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는 축산물수입 판 매관련 서류만 2년간 보관토록 함
 -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

- 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보관업·축산물은 반업·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중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수입축산물 판매관련 기록을 구 체화 하도록 개정(별표 13. 제3호 라목)
-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업무를 검역원으로 전환(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완료, 06.9.23 부터 시행)
- 3) 향후 추진계획
-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(제24조제1항)완료 에 따른 이관추진
- (현행): 제21조제1항제5호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(개정): --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조제1 항제6호 축산물판매업중 축산물을 수입하 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장(이하 "검역원장"이라 한 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6. 위생·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||||||||

- 6.1 소비자 단체와 협력 강화
- 1) 추진과제
-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소비에 관한 교육 · 홍보
-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임원 참여확대/
- 축산물위생심의회 위원 전체인원의 약 25%수준

- 생산자, 수의관계 공무원 교육시 소비자단 체 임직원 강사초빙
- 축산물 위생·안전성 연구사업공동수행 및 캠페인 실시 등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- 05년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사업 추진
-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
- 소비자단체(12명) 및 여성심의위원할당확 대(16명, 전체 30%)
- 소보원 및 소시모와 과학적 공동연구 등 공 동사업실시 (검역원)
-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교육시 소비자단체 임원 참여(강사)
- 소비자보호원(서정희 위원), 지역소비자단체 임원, 소시모(황선옥 이사), 녹색 소비자연대(조윤미 본부장), 지역 소비자단체 임원 등
- 소비자 단체별 협력사업 추진과제 선정 (13 개 단체 13개 과제)
- 3) 향후 추진계획
- 소비자 단체별 사업추진내용의 분석 및 정 책에 반영
- 06 소비자 단체별 협력사업 추진과제 선정